

가족 × 민주주의 시민교육
season 1.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가족

가족은 민주적입니까

2018. 9. 6 ~ 10. 18

목차

천주희 | 문화연구자

나 혼자 산다?!

‘정상가족’의 신화와 비혼문화 1

유화정 | 젠더학연구자, 가족구성권연구소(준) 연구위원

가족은 안전한 곳인가

가족 ÷ 젠더, 평등, 민주주의 19

성정숙 |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공동대표, 가족구성권연구소(준) 연구위원

돌봄의 정치학

돌봄의 ‘사회화’를 넘어 돌봄의 ‘민주화’로 33

김원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기업과 가족, 다시보기

기업과 노동자, 가족이 맺어야 할 새로운 관계 45

나영정 |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 가족구성권연구소(준) 연구위원

교차적 접근으로 ‘가족하기’

사회정책에서 ‘가족’, 가족정책에서 ‘사회’ 61

김순남 | 성공회대학교 교수, 가족구성권연구소(준) 대표

실천적 접근으로 ‘가족하기’

‘가족하는 개인’들과 해체된 정상성 71

나 혼자 산다?!

‘정상가족’의 신화와 비혼문화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핵가족은 오래도록 ‘정상가족’의 신화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 정상가족 신화를 재생산하던 가부장적 물질토대가 신자유주의 이후 흔들림에 따라 정상가족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고 있다. 1인 가구, 비혼모/비혼부, 비혼 동거, 공동주거 등 현연 중심에서 벗어나 새롭게 가구 혹은 가족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복지제도나 문화적 인식은 혼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 강의에서는 ‘정상가족’ 모델이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새롭게 태동하는 가족의 다양한 구성권과 삶에 대해 사유한다.

천주희 | 문화연구자

1. 가족 家族

1. 가족 家族

가족 家族

[뜻풀이] 지아버의 족보 혹은 계보

가 家 _ 집, 지아버

족 族 _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겨레, 가계

[사전]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1. 가족 家族

정상가족 이란?



질문을 받지 않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성애 기반의
부모 + 자녀 가족 구성

1. 가족 家族



친족/촌락



대가족



핵가족

1. 가족 家族

가족이란

구성원의 역할과 행위, 그들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역사적 구성물, 인간관계의 다양한 집합, 보편적이거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 톨리, 루이스, 조앤 스콧, 『여성 노동 가족』

1. 가족 家族



N 개의
가족 형태

1. 가족^{家族}

가족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은

- 자연스럽게 정상적이라고 여겨왔던 혈연중심의 가족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 사적영역 ->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 젠더, 연령, 혈연, 가부장, 자원의 분배 등에서 비롯한 차별과 권력, 폭력의 기원에 대해 묻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것

1. 가족^{家族}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족

-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가족문화 및 제도에 대한 비판과 거부
 - '가족' 만들기에 가려진 여성들의 노동, 헌신, 사랑
 - 가족 내 성차별, 젠더화된 역할분담, 아버지 권위 등
 - '딸'에서 '며느리'로 사회화 되는 과정
- 차별, 폭력 대신 평등을 지향
- 다양한 관계와 친밀성의 영역으로서 새로운 가족 모델을 상상

2. 한국의 가족 변화와 담론

2. 한국의 가족 변화와 담론

2000년대 초

- 1인 가구 증가
- 가족의 탈 제도화

1990년대와 외환위기

- '가족해체' or '다양한 가족'
-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 '기획된 가족', '위험 가족'

1960 ~ 1980년대

압축성장기, '운명공동체' 가족

- 황정미, "한국인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황해문화 2018 봄

2. 한국의 가족 변화와 담론

- * 가족은 늘 '위기'에 처한다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위기
 - 가족 재생산 위기
 - 탈 가족화/집단화 우려 ~ 개인주의에 대한 경계
- * '운명공동체'로서 가족의 위기

• 황정미, "한국인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황해문화 2018 봄

2. 한국의 가족 변화와 담론

- * 위험의 개인화 담론
 - 구조적 불안의 개인 책임화
 - 청년층의 가족형성 지연, 비혼 현상을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가족'의 불안정화는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은 지니지만, 구조적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위험관리 기술. 가족 단위 생존 전략은 강화됨.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3. 자원, 계급의 관점에서 가족

3. 자원, 계급의 관점에서 가족

2000년대 이후,

- 소득 양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 N포 세대 출현, 흙수저-금수저 담론
: 자원의 분배, 가족재생산의 어려움

- 여성주의 운동과 가족 내 성차별 문제의식
: 웹툰 <며느라기>
: 여성들의 가족관, 결혼관 변화

3. 자원, 계급의 관점에서 가족

결혼비용 (평균)



출처: 한국결혼문화연구소, 1999년~2005년 결혼비용과 결혼문화/ 듀오월드, '2018 신혼부부 결혼비용보고서'

3. 자원, 계급의 관점에서 가족

결혼시장의 변화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가족을 계급에 따라 재구성함. 가난한 집단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함. 부유한 집단의 여성은 결혼비율이 가장 높음.

사례. 에이미 / 릴리

- **에이미:** 로스쿨 재학. 28세. 학교에서 타일러를 만남. 에이미는 6개월 계약직, 타일러는 무보수 인턴(판사보조). 결혼을 앞두고 있음. 타일러 부모에게 돈을 빌릴 예정. 학자금 대출이 있지만,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두 명 낳고 싶음.
- **릴리:** 임신 4개월째. 남자친구가 있으나 무직 상태. 도시에서 투잡. 부모님은 아프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지 않으려고 함. 결혼 할 생각은 없음. 자신과 아이는 책임질 수 있지만, 남편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함.

준 카르본-나오미 칸, <결혼시장>, 시대의 창

3. 자원, 계급의 관점에서 가족

결혼은 보편적이고 저항의 대상이었음.

- 1970년대 대학에 진학한 여성은 23세 이전에 결혼. 7년 늦게 대학에 진학한 여성은 30%만 23세 이전에 결혼.
- 성년 연령 21세 -> 18세로 조정. 부모 동의 없이 피임약 처방.
- 19세기 대졸 여성의 절반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음.

오늘날 결혼은 미국사회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계급 표식.

-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특권의 상징.
- 대졸 여성은 결혼을 가장 많이 할 집단.
- 여성의 자율성 증가. 인적 자본에 많이 투자할수록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준 카르본-나오미 칸, <결혼시장>, 시대의 창

4. 1인 가구 증가와 비혼문화



4. 1인가구 증가와 비혼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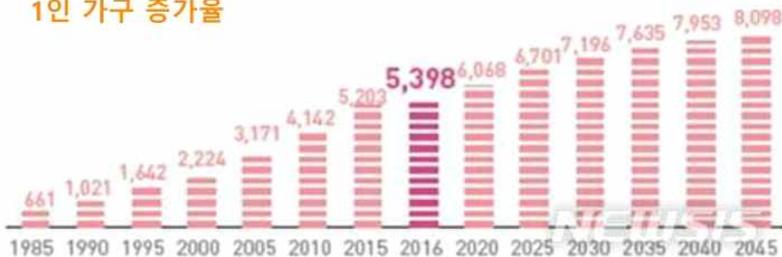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 결혼연령 상승, 혼인/출산 감소
- '골드 미스'의 출현
: 여성학력 증가, 전문직 진출 증가
- 외환위기 이후, 이혼율 증가

- (최근) 줄혼 담론

4. 1인가구 증가와 비혼문화

1인 가구 증가율



전체 가구수(1936만8000가구): 1인 가구 27.9%로 가장 큼. 2인 가구(26.2%), 3인 가구(21.4%), 4인 가구(18.3%) 5인 이상 가구(6.2%)

보건복지부(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4. 1인 가구 증가와 비혼문화

결혼시장, 가족구성 결정, 1인 가구 및 비혼 증가 현상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

새로운 (탈)가족모델 만들기, 사회변화의 주체 가능성 담지

4. 1인 가구 증가와 비혼문화

Q. 1인 가구, 비혼 여성의 증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결혼과 출산 영향
 - : 가족형성 필수 전제. (핵)가족 정상성 회복 정책
 - : 청년 남성 '가장'의 지위, 가족을 거부하는 여성을 '문제적' 존재
- 가족중심의 복지제도 개선: 사회정책에서 배제
- 여성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사고 변화

4. 1인 가구 증가와 비혼문화

현실에서 가족구성의 변화 < - > 제도, 정책 핵가족 중심

오히려, 현실을 민첩하게 포착하는 곳은 소비시장.
혼술, 혼밥, 주거, 1인 가구 마케팅 등

5. 저는 비혼동거 중입니다만,



5. 저는 비혼동거 중입니다만,

결혼을 마주하면서,
비혼에 대해 생각했고,
지금은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독립하기 위해 동거중입니다.

5. 저는 비혼동거 중입니다만,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집수리학교에 등록하고

5. 저는 비혼동거 중입니다만,



삶과 사유를 공유하고, 요리와 자전거를 배우고, 축제와 공연을 함께 기획하고, 집회에도 갑니다. 서로 작업에 비평과 지지를 격하게 나누는 관계랄까요.

5. 저는 비혼동거 중입니다만,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결혼?

결혼하지 않아도,
혈연가족이 아니더라도,
비정상가족의 삶과 상상력, 그리고 실험들
나눠주실래요?

5. 저는 비혼동거 중입니다만,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기 위한 문화, 제도/정책

- 가사의 기술, 돌봄의 분배
- 사회적 가족: 잘 노는 언니
- 1인 가구/ 비혼 가구를 위한 정책
- 생활동반자법



대화 나눠요

chjru@gmail.com

가족은 안전한 곳인가

가족 ÷ 젠더, 평등, 민주주의

최근 한국사회는 젠더, 평등, 민주주의의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출산률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쏟아내고, 여전히 '전통적 가족'의 이미지를 낭만화하며 결혼 및 연애 장려 정책을 펴낸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의문이 든다. '가족'은 왜 젠더, 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가? 마치 '가족'은 무결점의 완벽한 안전과 안정의 공간으로 표상되지만, 사실 요즘의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가족 관계 내에서의 폭력 및 살인사건들이 적지 않다. 어쩌면 가족은 사회 내 그 어느 조직 및 공동체보다 더 불평등하고 위험한 곳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강좌의 궁극적 목표는 '가족'은 젠더 관점에서 평등한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한국 사회의 가족의 불/평등함을 직시하고, 가족 x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젠더 평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유화정 | 젠더학연구자, 가족구성권연구소(준) 연구위원

‘가족’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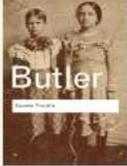
0. 가족 - 젠더·평등·민주주의 관점의 필요

- 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는/받지않는 가족 구성 권리
- 가족은 평등한가?
- 가족은 민주주의적인가?

젠더(gender)

- 사회적 성 (사회구성론적 관점)
- 여성성(Femininity)과 남성성(Masculinity)이라는 성별은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에 불과 → ‘여성 억압’ 드러냄.

젠더 수행성 (gender performativity)

-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 1990)
- 
- 젠더 수행성 - 젠더는 사회가 규범적으로 정한 여성젠더의 여성성과 남성젠더의 남성성을 위한 여성되기와 남성되기의 반복적인 수행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 젠더의 본질적 효과는 젠더 일관성의 규제적 관행때문에 ‘수행적’으로 생산되고 강제된 것이다. 여기서 ‘수행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목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는 언제나 행위이다.

젠더 각본 (gender script)



1. 한국사회의 가족 문화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 이성애 규범적 (heteronormative) 결혼 문화
- 가부장제
- 부계혈통 유지

2. 변화의 조짐

- 동성결혼 가시화 및 법적 문제제기
- TV예능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 - '가모장숙'
- 가족 간 호칭에 관한 문제제기
- 부계 성(性) 승계에 관한 비판적 문제제기

동성결혼 가시화 및 법적 문제제기



가모장숙



가족 간 호칭에 관한 문제제기

‘도련님’ ‘처남’ 등 성차별적 가족 호칭 고친다
 동아일보 PICK A1면1단 1일 전 네이버뉴스
 [동아일보] 여성부 “공청회 의견 수렴 통해 개선” 정부가 ‘도련님’과 ‘처남’ 인식이 담긴 가족 호칭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양성

가족호칭 바뀐다네요? ㅎㅎ 21시간 전
 가족호칭이 바뀐대요~ ㅎㅎ 쉽지만은 않겠쇼? 친작에 좀 바
 대전세종맘스베이비 카페 naver.com/msbab...

가족호칭 저만 오글거리나요?? 2일 전
 별일은 아니지만, ㅋㅋ 저는 이상하게 호칭이 넘넘 오글거리요ㅠ 남편이 늦동이 여동생(도 오글ㅋㅋ 남편네쪽은 호칭을 중요시한다구 들어서 뭔가 앞으로 걱정안닌 걱정이ㅋㅋ

가족 호칭도 성평등... ‘도련님’ ‘시댁’ 바꾼다 22시간 전
 가족 호칭도 성평등... ‘도련님’ ‘시댁’ 바꾼다 출처 : 채널A | 네이버 뉴스 http://naver.m
 익숙하게 부르려면 우리 생애는 안되겠지요~

부계 성(性) 승계에 관한 비판적 문제제기

 ["민법상 '부계성본\(父系姓本\)' 원칙 개정해야"](#) 법률신문 2018.0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민법의 부계성본(父系姓本)주의를 문제
 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부계성본주의를 지켜주는 법적 장치

 ["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국민 67.6% "부성주의 원칙"](#)
 여성신문 2018.05.11. 네이버뉴스 
 이날 심포지엄에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계성본주
 식적인 "이렇게 부계성본제도는 차별적인 젠더 시스템을 표상할 뿐"

 [\[와글와글\] '아버지성 강제' 규정 폐지](#) 한국경제 2007.03.07.
 반면 아이디 '백두천지'는 "엄마가 자녀를 부양한다면 엄마 성을 따르
 다"고 말했고, '즐거운하루'도 "부계성 강제주의가 미풍양속인지 아닌지
 제"라며 "주구천려 새 선택 마루 스

[〈대학가 성\(姓\)안쓰기 확산〉](#) 연합뉴스 2003.04.02. 네이버뉴스 
 은국씨는 2일 "어머니의 성 역시 결국 부계성을 물려받은 것이기에 '부모성 함께 쓰기 등
 재가 남아있다"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제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성을 쓰지

3. 하지만 여전히

- 결혼 압박
- 가족 내 고정된 성역할 강요
- 가정폭력
- 다양한 가족 구성에 관한 부정적 시선
 (1인가구, 반려동물, 딩크족, 동거, 동성결혼 등)

결혼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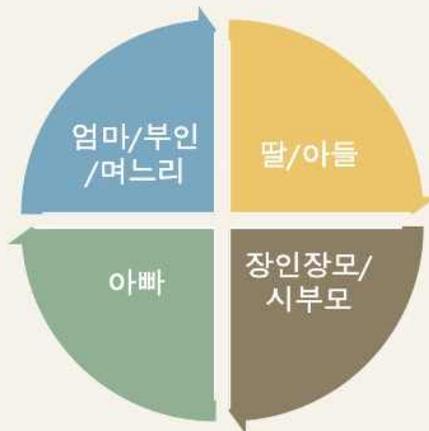
가장 듣기 싫은 결혼 관련 잔소리는?



결혼 압박을 가하는 사람은 누구인



가족 내 고정된 성역할 강요



가정폭력 (전체 가구 중 1/3 부부폭력)

(가정폭력실태조사, 2017)



다양한 가족 구성에 관한 부정적 시선

[창간기념기획] **신가족관계/동거사-반려犬, 우리도 가족입니다** 메트로신문 201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200조원
해결 비용에 대해 실패로 낙인하고 동거가족에 대한 법적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새로운



전원주 "혼전 동거 몸 마음 다줘, 여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

스포츠투데이 2017.09.01

여자의 동거경험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조여까지 등장한 요즘,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창간기획 - 다가오는 '목말사회'] **미혼모 2만명 시대... "행복할"**

세계일보 A10면 2018.03.05. 네이버뉴스

"사회적 낙인 탓에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절박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상가족=행복가족? 미혼모



김조광수 첫 동성결혼 발표, 명목적 비난받을 일인가 뉴스엔 2

김조광수 감독(왼쪽), 김승한 대표 [김조광수 감독이 김승한 대표와 국
표한 가운데... 기자회견 기사와 사진이 보도된 뒤 두 사람을 응원하는

4. 가족, 정말 꼭 필요한가? 원하는가?

■ 누가 '결혼'을 원하는가?



문 정부 '신혼희망타운' 정책 공개...내집 마련, 결혼, 자녀
시빅뉴스 2018.07.06.

요즘 내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
결방방으로 최근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신혼희망

■ 누가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가?



1년 새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정책 516개 늘어 이투데이

임산·결혼 지원정책을 비롯한 전체 출산 지원정책은 1년 전보
는 이 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한눈에 보

■ 나는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5.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근본적 질문

'가족'은 무엇인가?

6.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구성권?

→ 가족의 구성과 그 생활에 있어 차별과 배제, 폭력을 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 및 생활공동체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 문제제기 -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7. 젠더·평등·민주주의 관점에서의 가족

■ 개인의 젠더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가족 구성 권리

■ 위계적이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은 평등한 가족

■ 민주주의적인 가족을 향하여

8. 마무리

나는 누구와 어떻게
'가족'으로 살고 싶은가?

Q & A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THE END

돌봄의 정치학

돌봄의 '사회화'를 넘어 돌봄의 '민주화'로

우리의 삶은 임금노동 이외에도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돌봄노동은 인간의 삶의 중심에서 비껴나 주변화 되었다. 의존하는 사람은 '취약계층'으로 쉽게 타자화되며, 돌봄노동자 또한 나쁜 일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 '독립된 개별'로서의 개인은 신화에 가깝다. 서로 돌보는 사회가 인간이 가장 평화롭게 번영했던 사회였으며, 이 강의는 '서로 의존함'과 '서로 관계함'이 인간의 중대한 존재방식이며, 이러한 존재방식이 주체적 인간이 되는 것과 적대적이지 않음을 성찰한다. 돌봄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를 다른 방향으로 재편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나 가족의 과업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시민성(citizenship)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 강의의 목표는 돌봄의 민주화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돌봄의 정치학의 실천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성정숙 |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공동대표, 가족구성권연구소(준) 연구위원

나누고 싶은 문제의식

- 왜 돌봄(노동)은 삶의 중심에서 비껴나 주변화되었는가?
: '돌봄'과 '의존'을 다시 생각해보기
- 돌봄의 공백 이후, 돌봄은 '사회화'되었는가?
- 돌봄의 정치학을 통한 돌봄을 민주화하기



Q.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의 내용

Q)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다.

학교 가서 열공! 했다.

아이를 키웠다.



가사일을 했다.

이 일들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구성하나요?



Q.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의 내용

Q. 그림이 담고 있는 것을 따져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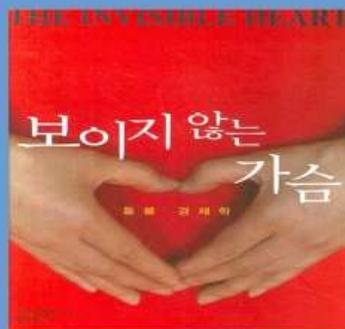
돌보는 일(가족에서/일터에서)은 여성의 일!



I. 왜 돌봄(노동)은 삶의 중심에서 비껴나 주변화되었는가?

Q. 나의 일상에서 돌봄을 뺀다면?

아침에 일어나 일상을 시작할 수 없다! → 재생산노동
하지만, 보이지 않고 가치 지불되지 않는 부분노동



1. 왜 돌봄(노동)은 삶의 중심에서 비껴나 주변화되었는가?

돌봄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

1. 돌봄의 가치에 대한 질문

- 어떻게 돌봄은 삶에서 '부차적인 것'인 것이 되었나?

2. 젠더의 질문

- 어떻게 돌봄은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 되었나?

- 어떻게 보이지 않는 노동이 되었나?



2.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 페미니스트 돌봄의 윤리

1) 돌봄이란?

- 이성과 감성을 포괄하여 특정한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성이 깃든 노동.
-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론적 접근
- 돌봄은 자신의 이해보다 타인의 욕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일
- 돌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심적인 것

2) 인간은 돌봄제공자 & 돌봄수혜자

- 인간은 타인의 돌봄으로 생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존재로, 모든 인간은 돌봄을 수행하는 동시에 돌봄을 받음
- 인간은 절대적 의존기/ 장애 및 노령으로 인한 의존기 등 전 생애 동안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돌봄욕구에 직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공유

→ 돌봄은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이자, 인간의 존재 방식



2.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 페미니스트 돌봄의 윤리

3) 의존의 '정상성'

- 의존은 인간의 존재 방식, 태어나면서 생존하는 자체가 의존, 의존관계를 통해 자아를 구성함
- '인간이 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타인과의 관계가 개인성(personhood) 개념의 중심에 포함되어야 함
- 내가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과 잘 의존하여 함께 사는 것과는 대립적이지 않음

→ '의존'은 극복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받고 번성시켜야 할 '정상적' 상태

4) '의존자'에 대한 낙인

- 사회가 의존을 '비정상적이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가치절하함
- 생산노동을 할 능력이 없거나 소비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잉여'로 간주하고, '취약계층'으로 대상화. '부정수급자', '도덕적 해이'로 낙인 찍음
- 타자화하는 과정은 의존에 대한 자신의 혐오를 투사하는 것

→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돌봄노동자 모두 낙인찍고 사회의 돌봄을 주변화



2.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 페미니스트 돌봄의 윤리

4) 독립과 자립의 신화 : '연립'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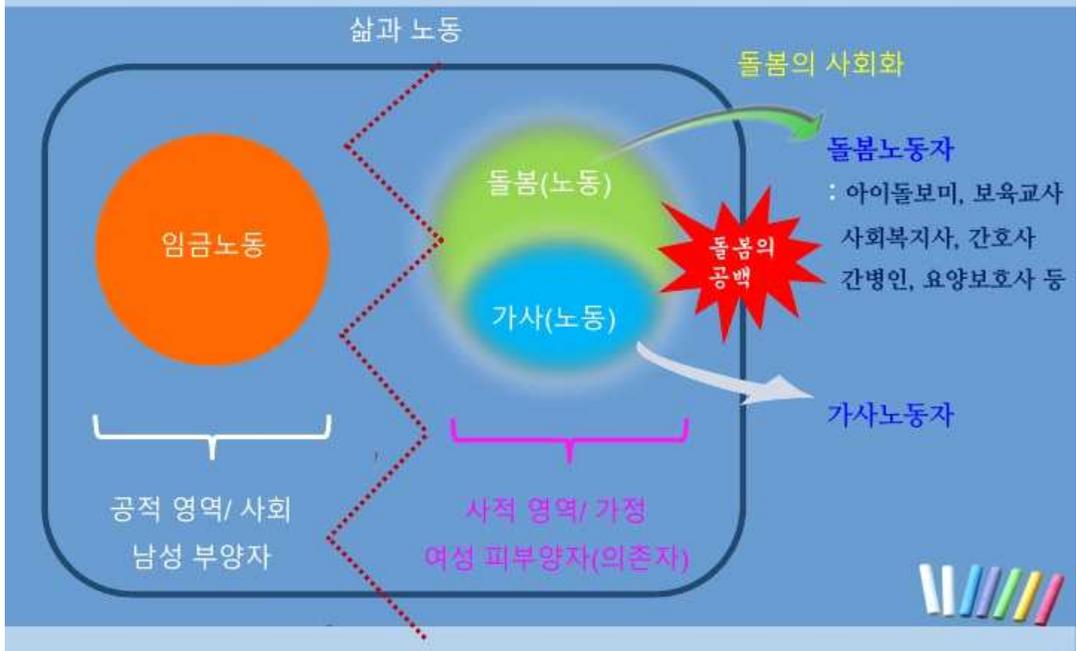
- 인간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며 필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현재의 시장과 사회, 정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독립적인 인간', '자율성', '생산 노동'의 패러다임이 '인간 의존'의 불가피한 사실을 은폐하고 암묵적으로 부정해왔음.
- 독립과 생산성을 전제한 호혜적 협력관계에 참여할 수 없는 의존자들은 시민권에서 배제함 (키테이, 2001)
- 자립/의존의 이분법을 전제한 '개별화된 자립'은 고립으로 갈 가능성 있으므로 이분법의 해체와 공동체/공생의 노선으로 타인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인식하는 것이 필요

→ "연립(聯立 interdependency)", 함께 어울려 섬,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 & 서로 서기 등이 "가장 자연(然)스러운 존재함(立)"의 형태임

→ 인간의 진보와 번성은 돌봄에 의한 것. 연립을 위한 돌봄, 연립을 쟁취하는 돌봄



3. 젠더의 질문 : 돌봄은 어떻게 '여성'의 역할이 되었나?



3. 젠더의 질문 : 돌봄은 어떻게 '여성'의 역할이 되었나?

1.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 성별화된 언어, 성별화된 전제와 논리구조의 '돌봄'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폴리스(광장/공적)와 오이코스(가정/사적)으로 구분하고, 폴리스를 정치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남성의 영역으로, 오이코스는 결코 정치적 영역이 될 수 없는 사적 영역, 보일 수 없는 여성의 영역으로 구분함
- 돌봄은 당연한 여성의 역할, 여성의 일, 여성의 가치, 자연스러운 여성의 운명이 됨
- 가정은 "무정한 세상의 안식처(Lasch, 2005)"라고 하는 것은 신화이자 이데올로기
- 사적 영역에 여성을 배치하여 공적 영역으로의 접근을 배제하고, 불평등한 젠더관계와 이에 근거한 불평등한 돌봄의 권력관계를 자연화함
- 돌봄을 당연하게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어떤 현상을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간주하는 것은 그것의 변화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 것 (트론토, 2013)

→ 여성과 권력 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사회적 기제를 유지

→ 모든 돌봄의 관계가 포함하는 권력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타개하는 것이 핵심



3. 젠더의 질문 : 돌봄은 어떻게 '여성'의 역할이 되었나?

2. 성별분업, 공/사 구분을 비판하기

- 아이리스 매리언 영(2017)

: 무엇이 사적이며, 무엇이 공적인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이 배제하는 것으로서의 사적인 것”로 정의하는 것이 아님

: **사적인 것이란?**

한 개인이 스스로 공적인 시선(국가와 정부, 사회로부터)에서 물러나겠다고 선택한 것

→ 그 어떤 사람의 실천이나 행동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

→ 스스로 자유롭게 공적 시선에서 물러남을 선택했을 때 사적 영역의 개념

→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사적인 것’으로, 강제되어서는 안 됨

→ 또한 그 어떤 사회제도나 실천도 공적인 논의와 표현에 적합한 주제가 아니라고 선형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됨



3. 돌봄의 사회화

1. 돌봄 의제의 등장 - 돌봄의 사회화!

- 1) 사적 영역으로 무급의 노동이었던 여성들의 ‘돌봄’ 이 정치 영역의 어젠다로!

: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저출생의 인구지표 악화 등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돌봄의 재편 relocation of care” (세븐휴이젠, 2003)

- 2) 국가가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분담하겠다”며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

그러나 “사회화”의 내용은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의 심화로!

✓ 사회화가 공공화를 확증하는 것은 아님



3. 돌봄의 사회화

2. 복지국가의 딜레마 - '탈시장화'와 '탈가족화'는 성취가능한가?

- 1) 탈시장화란? '탈상품화'라고도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이용, 소비 등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배제 정도를 말한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삶의 유지에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권으로서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도. 돈이 없어도 권리로서 공공재의 확보가능 수준
- 2) 탈가족화란?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을 수용한 개념. 가족의 돌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 돌봄노동(무급노동)을 인정하고 현금(수당)으로 보상하기

→ 돌봄노동을 돌봄 제공 기관을 통해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하기

But, 정책효과는?

:현금의 보상은 오히려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결과 → 여전히 돌봄은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

:시장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돌봄 시장을 확대하면서 불평등한 돌봄 현실을 악화시킴

:불안정하고 취약한 여성의 일자리가 됨 → 젠더화된 일자리



3. 돌봄의 사회화

3. 돌봄의 "재가족화", "돌봄의 재여성화" ?

- 재가족화(refamilization): 돌봄노동을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다시 배치하는 현상
-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의 인프라가 확대되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적 동기를 강화하는 현금(수당)으로의 보상은 돌봄노동의 재여성화, 재가족화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짐
- 문화적으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제도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등이 수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등의 정책은 젠더화된 돌봄의 방향을 바꾸지 못함

→ 돌봄의 '사회화'를 넘어 구체적인 젠더 관점을 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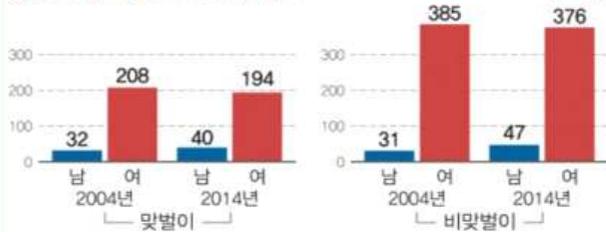
- ✓ 불평등한 돌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 ✓ 성별 이분법을 깨고, 돌봄을 (함께)하는 남성,
- ✓ 모든 시민이 돌봄을 하는 "돌봄의 민주화"로 확장되어야 함



3. 돌봄의 사회화

일·가정양립지표 주요 내용

맞벌이 상대별 가사노동시간



- ✓ 2014년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40분**, 여자 **3시간 14분**으로 5년 전보다 남자는 3분 증가 여자는 6분 감소
- ✓ **비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47분**으로 맞벌이 가구 남자와 별 차이(7분) 없으나, 여자는 **6시간 16분**으로 맞벌이 가구 여자보다 3시간 2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3시간 2분이 더 많으며, 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주요국 중 가장 적은 45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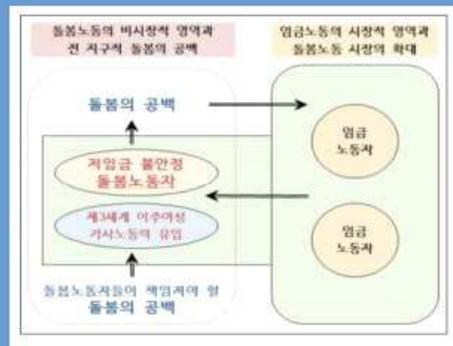
2015 일·가정양립 지표(통계청)

3. 돌봄의 사회화

4. 인증화된 돌봄노동, 주변화된 돌봄노동

- 가정 안에서는 부불노동으로, 가정 밖에서는 낮은 임금, 학대받는 나쁜 일자리, 사소한 노동 (하인/ 노예)
- 현재 돌봄이 낮은 지위와 가난한 여성에게, 인증적으로 박탈된 흑인과 아시아여성에게 즉, 주변화된 집단의 몫으로 전가 (지배권력의 효과)
- 돌봄노동자의 자녀들의 돌봄 공백과 돌봄 위기

돌봄의 위기 : “엄마찾아 삼만리”



→ 돌봄노동은 탈성별화되고 탈인증화되어야 함

사태
“대한항공 일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힘들어
도망가자 여권 뺏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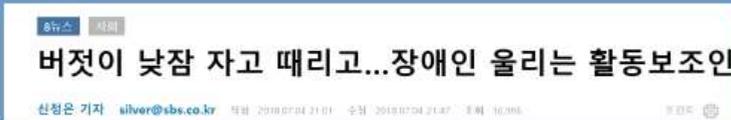
경향신문 2015년 4월 22일 1면 10면 4면

남양주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3. 돌봄의 사회화

5. 의존관계와 돌봄제공자의 권력

-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비대칭임을 인식하고 성찰
 - 의존관계가 지배관계가 되지 않도록 권력과 위계에 대한 조건들을 검토
 - 돌봄제공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착취적일수록, 돌봄제공자의 목소리가 배제될수록 강제적 상황에서의 노동이 이루어질수록
- 돌봄제공자가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을수록 의존자는 무관심,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
- 돌봄이 권력관계 안에서 위치 지워지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2914&plink=ORI&cooper=DAUM

4. 돌봄의 정치학 : 돌봄 책임의 정치 의제화, 사회변혁의 동력

1. 돌봄의 정치학 :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 돌봄의 정치학이란? 돌봄 육구의 정의로부터 타자화, 주변화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합하는 정치로서, 인간의 삶에서 지배적인 돌봄을 주변화하는 권력과 특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 이윤추구와 생산성, 성장을 목표로 한 세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돌봄이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는 대안적 삶 모색하고, 의존을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자 존재방식으로 인식하여 돌봄의 이용자도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헌신
 - 돌봄노동이 부차적이고 사소한 노동이 아닌 공동체 구성의 핵심적 노동으로, 시민 모두가 하는 민주적 시민권의 실천
- 돌봄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돌봄을 인간의 삶의 중심으로!
- 세계는 다르게 재편되고 돌봄이 시민권의 중요한 기준이 됨
- 돌봄은 민주적 시민권의 실천, 민주주의의 핵심 / 함께 돌봄(careing with)의 실현



4. 돌봄의 정치학 : 돌봄 책임의 정치 의제화, 사회변혁의 동력

2. 돌봄의 민주화 : 마살의 시민권에 대한 비판과 확장의 함의

- 비장애인 남성의 입장이 보편적인 것으로 시민권 개념을 구축
-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로 제한/ 사적 영역의 배제
- 남성, 성인, 백인, 유산자만 가능, 복지국가에서는 노동자로만 확대
- 시민의 무(無)장애성을 전제로 함. 자립과 독립의 가능한 시민

→ “취약성”과 “의존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

→ 배타적인 시민권의 개념에서 “시민성”에 대한 모색을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시민”으로의 확장

: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취약성을 우리의 시민적 조건과 배경을

다루는데 참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가진 중요한 조건을 간과

→ 남성의 돌봄노동은 “돌봄의 민주화” 로의 전환점이 됨

→ 경제적 자산과 기회, 권력의 공유와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분담을 통해 가정 내 작동하는 불평등한 젠더관계, 위계를 변화시켜,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만들기



4. 돌봄의 정치학 : 돌봄 책임의 정치 의제화, 사회변혁의 동력

❖ 트론토(“돌봄 민주주의”, 2013)

3.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점 : 모든 행위자가 자신을 돌봄의 수혜자로 생각한다면?

-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 의존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어 돌봄수혜자가 타자로 간주되지 않음으로 좀 더 진정한 동감의 사회심리적 과정이 가능해져서 공감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 행위자가 시장에서 경쟁가능한 합리적 행위만 한다는 전제를 허물고, 시장적 삶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음

4. 돌봄의 삼각화

- 돌봄을 2자 관계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
- 돌봄에서의 들러리 처리에 대한 경고 : 돌봄의 양자 관계모델은 돌봄의 비대칭성에 관한 불쾌함과 불편함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함.

→ 양자 관계로서의 돌봄에 대한 도전(관계를 더하고 만들기)으로 위계적 관계를 깰 수 있음





기업과 가족, 다시보기

기업과 노동자, 가족이 맺어야 할 새로운 관계

기업은 늘 노동자를 특정한 가족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내 존재'로 간주해 왔다. 특히 산업화 이후 한국 기업에서 가족정책은 가장-남성-노동자라는 노동자 상을 구축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으며, 이는 노동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다. 일-가족 양립 논의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 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등장했다. '돌봄을 일과 병행하는 노동자'로, 돌봄 책임 없이 오로지 생계부양에만 매진하는 기존의 노동자 상을 대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그러한 전환을 이끌어냈는지는 의문이다. 과연 한국의 기업에서 '가족적 존재'로서 노동자 상은 변화하고 있는가, 기업은 변화하는 노동자의 가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 x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기업과 노동자/가족이 맺어야 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김원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기업과 가족, 새로 만나다?

가족친화 인증마크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서, 그러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꽃
가족친화경영을 따올 수 있다는 의미

-  붉은 다홍색은 **가족의 사랑**,
-  노란색은 **기업의 배려와 열정**,
-  초록색은 **사회적 관심과 안정된 제도 상징**

가족친화기업



2017 워라벨 실천기업

워라벨 기업



“LG디스플레이, 임산부의 날 맞아 가족친화행사 열어”



“러쉬코리아, 비혼 축하파티 개최, 반려동물 수당 지급”

나날 이야기

- 기업-가족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왔나
 - 기업-가족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 노동자상의 구성과 변화
 - '가족친화' 논의의 등장과 전개
- 젠더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 공/사, 일/타/가족, 남/녀 이분법을 넘어
 - 가족친화/일가족양립 논의의 급진성과 함정
- 오늘날의 변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 기업-가족 관계, 역사적 맥락

'이상적 노동자 상'의 구성과 변화

● 산업화와 기업-가족의 관계 (미국) ●

○ 산업화 초기의 기업과 가족

- 19세기까지 다수 공장은 가족 단위 노동력을 기반으로 운영

○ 산업화의 진전과 기업-가족 관계 변화

- 18세기 말 가정성(domesticity) 규범의 등장... "가정은 식막한 세계의 안식처"
- 19세기 말 이중 영역(dual spheres) 이데올로기의 확산... '생계부양자 남성과 전업주부 여성은 각각 분리된 두 영역에서 자기 주권을 갖는다'
- 20세기 초 기업과 노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정의, 각종 보험 등 가족부양을 위한 베니핏 제공... '복지자본주의' 체계의 확립

'가족임금'의 탄생



포드사, 1914년 '하루 5달러(Five Dollar Day)' 방침 도입

10

'이상적 노동자 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관리자의 요구에만 반응하며, 오랜 시간 일할 수 있고,
육아 가사 등 다른 책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

11

● 한국의 산업화와 기업-가족 관계 1 ●

○ 60-80년대 초반 고도성장기

- 국가의 성장위주 발전전략과 가부장적 가족주의 동원
-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 '공장을 가정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

직장의 제2가정화: 기업주는 가장과 같은 위치에서 종업원의 불편한 점과 어려운 일들을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하고, 종업원은 또 기업주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고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알뜰하게 보살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1989: 223, 김영선 2011: 120에서 재인용).

- 남성 숙련노동력의 부상, 가족부양을 지원하는 기업 정책 등장 (주거, 자녀 학자금 지원 등)

12

● 한국의 산업화와 기업-가족 관계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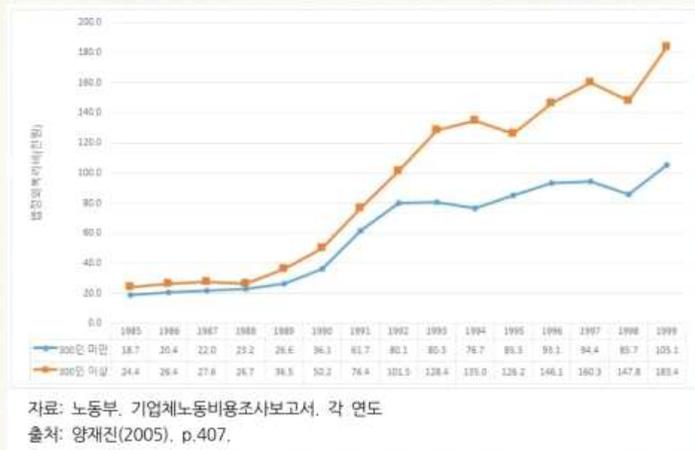
○ 87년 민주화 이후

-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노동통제의 제한적 완화, 국가복지 지체
-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가족주의의 활용, 변형

"이 같은 제도들은 사원과 사원가족, 회사를 한 테두리로 묶어 평생직장화하고 노사화합의 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인데 다른 기업에서도 앞 다투어 추진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한가족 운동]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경영전략은 기법 또한 다양하다. 사원가족들을 시간제사원으로 입사시키는가 하면 △부부동반 해외여행 △사원가족초청 회사경영설명회 △자녀부모초청 위안잔치 등도 이러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채택된 최신기법이다(매일경제 1988.12.24)."

- 노사 공통의 이해, 제도적 조건에 따른 부양 지원 기업복지의 대대적 확대

13



기업규모별 1인당 법정외 복지비 추이 (1985-1999)

‘남성-가장 노동자 상’



가족 지위와 밀접히 결합된 노동자 상의 구성
‘노동자 = 가족의 대표 = 남성 가장’

• 한국의 산업화와 기업-가족 관계 3 •

○ 97년 경제위기 이후

- 고용안정성, 가족임금, 기업복지에 기초한 고용 모델 쇠퇴, 국가복지 확대
- 그럼에도 다수 기업의 복지 정책에서 부양중심성 유지
- '남성-가장 노동자상' 변화의 지체

“현대건설 기획팀 김** 차장은 요즘 어느 때보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연말을 맞고 있다. 그는 오늘 27일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회사에 출근한다. 회사가 외환위기로 고생한 임직원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마련한 자녀초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중략) 그뿐만 아니다. 가족들은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3박 4일의 금강산 여행을 갈 계획으로 꿈에 부풀어 있다. 회사쪽이 부서장급 이상 간부와 가족들을 초청해 금강산에서 새 천년의 시작을 맞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만에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한겨레 1999.12.20.).”

16

• ‘가족친화’ 논의의 등장과 전개

페미니즘 이슈로서 가족친화/일가족양립

- 젠더화된 일-가족 관계 변화의 수단
 - 남성 부양자 = '이상적 노동자상'에 기초한 기업 구조와 관행 전환
 - 노동자 = '잠재적 양육자'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업조직의 재구조화
- 기존 일-가족 관계의 변화를 위한 조건들
 - 일-가족 관계의 분리에서 통합으로 (예. 보육수당과 유연근무)
 - 일-가족 역할의 젠더화에서 탈젠더화로

18

한국 일가족양립 논의 1

- 출발: 성평등 이슈로서 '직장-가정 양립'
 - 80년대 후반 이후 여성운동,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과 일-가족 영역에서의 성평등 요구
- 생산성-경영혁신 이슈로서 '가족친화' 등장
 - 90년대 중반 세계화 시대 '해외 우수 기업'의 경영 혁신 사례로 등장

조지프 보이어 지음 '미래기업의 생존전략'
[서울경제] 1999-02-21 00면 1316쪽

「더 빨리, 더 빨리 하라. 차세대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이를 시찰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 고객 스스로 디자인하도록 하라. 계획의 길은 없다. 따라 추자 하지 말라.」

미국의 대표적 컨설턴트인 조지프 보이어와 지미 보이어가 편집한 「미래기업의 생존전략」(현대미디어 펴냄)에서 기업들에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다.

이 책은 미래의 기업들이 어떻게 일 가계적이고, 어떻게 더욱 조직적으로 변형하며, 어떻게 자신의 환경 및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혼돈을 제거하고 분포를 다루는 시간 안에 고도화된 주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며 하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 또한 기업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업들 가맹친화형 조직으로 바꾸어 육이 및 노년부문의 범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 디딤위너서는 못비에 공급 부족시도를 갖춰두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록스 사는 사람들에게 가맹관련 비용을 주고 있는데, 경쟁에 따라 최고 1만 달러까지 지원해준다.

이 책은 결론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는 변화의 촉진자 일 것이며,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뒤바꾸어놓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윤종 기자】

19

한국 일가족양립 논의 2

- 저출산 이슈로서 '일가족양립', 국가 주도 정책 확대
 -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 양육자-여성 연결의 재확립
- 가족친화, 여성·성평등 이슈에서 가족이슈로
 - 여성·성평등 정책과 가족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돈
 - 가족친화정책, 가족기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흡수

20

가족친화정책, 가족주의의 착종

구분	범주	대표 프로그램
가족친화법 제2조(정의)의 3 (2007.12.14.제정)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제2조 (2008.6.13.개정)	가족관계 증진제도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경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21

가족친화정책, 가족주의의 착종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바쁜 주중에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매일 생애주 수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운영하던 명제인용(2010년 12월부터 '가족사랑의 날'로 변경)하고, 매주 수요일로 확산하여 추진 중

가족사랑의 날 실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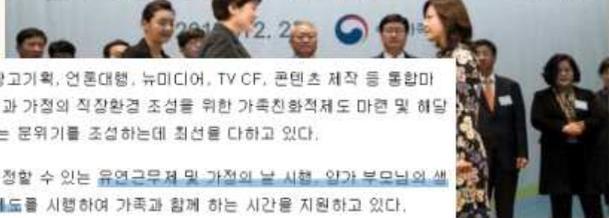
- 가족의 실천 사항: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가족 실천약속**
 하나, 대학, 놀이 등 매일 30분 이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하나,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하나, 매일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데이트한다.
 하나, 매주 1회 이상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린다.
- 일터의 실천 사항: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 실천 약속**
 하나,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한다.
 하나,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사랑의 날'로 하여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나, 직장탐방, 가족친화 교육 등 가족까지 배려하는 활동을 마련한다.
 하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에서는 수요일 재수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가계, 토끼미리 만들기 등)

22

가족친화기업? 가족같은 기업?

2016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기관 시상식



김남구 노현중에 위치한 예림씨엔피는 광고기획, 언론대행, 뉴미디어, TV CF, 콘텐츠 제작 등 통합미케팅 광고기획 및 대행사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적제도 마련 및 해당 제도를 제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림씨엔피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및 가정의 날 시행, 일가 부모님의 **생신 등 기념일에 조기 퇴근하는 축-Day** 제도를 시행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 및 출근 부담 감소를 위한 재택근무 및 자율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우수사원에게는 재충전의 시간과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문 광고인(아티스트) 85%가 유연근무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시현 예림씨엔피 대표는 가족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족간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회사의 미션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을 계기로 더욱더 직원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헤럴드타임즈 2016.12.17.

23

● 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

이대산(사진) KT 경영관리부문장(전무)은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직장 생활에 갑작스러운 단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무는 "우리나라 사회는 여성이 결혼과 임신을 하면 엄마로의 제 2의 삶에 대한 고민과 사회로 복귀할 시기에 겪는 고민 모두를 떠안아야 한다"며 "남성과 달리 여성 생애주기의 '특수성'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복지와 인사제도 방침의 큰 틀"이라고 했다.

실제로 KT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 임신기와 출산기, 육아기로 나누어 생애주기별 케어(ca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급여성 의료비 100% △초음파 검진비 30% 등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며, 재직기관과 관계 없이 임신한 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시기의 여성 직원이라면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신기 여직원을 대상으로 여성지원 서비스나 건강 관리, 출산 이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기 여직원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임신부 간담회를 사측이 상·하반기 한 번씩 총 두 차례 개최한다. 이 전무는 "임신이나 육아 관련 제도를 주변을 통해 들던 여성 직원들이 (회사가 전하는) 유용한 팁을 알아갈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다.

출처: 서울경제 2016.4.3.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력단절 막을 것"

24

● 기업-노동자가족, 새로운 관계 맺기

새로운 노동자 상

- 가족의 대표에서 개인으로
 - 아성에 핵가족의 대표, 남성가장 → 개인
 - 부양자에서 잠재적 양육자로
 - 돌봄 책임과 역할이 면제된 부양자 → 다양한 삶의 방식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살피는 자
- ⇒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실천을 수행하는 개인

26

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 보편적 방식의 노동조건 개선
 -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 주권 강화
 - 특정 가족 지위를 상정하는 휴가·휴직 → 모든 노동자가 사용 가능한 휴가·휴직
- 일-가족 역할의 탈젠더화
 - 양육자-남성, 노동자-여성 역할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확대
- 일-가족 관계의 통합적 재구성
 - 생계부양자 남성을 전제한 고용관행의 전환
 - 시장의 시간에서 돌봄의 시간으로

27

● 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 ●

-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 사회적 조직으로서 기업
 - 임원, 관리자,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활동에 참여
 - 공급자, 소비자, 주주, 채권자 등 행위자들 & 정부, 지역사회, 자연 환경과의 관계 위에 존재
 - 기업 '본래'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
- 어떻게 '잘 돌보는 기업'을 만들 것인가
 - 돌봄의 윤리를 기업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제시

28



워런,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Accountable Capitalism Act)

29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유산

Q & A

감사합니다

교차적 접근으로 ‘가족하기’

사회정책에서 ‘가족’, 가족정책에서 ‘사회’

‘교차적 접근’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이들이 친밀한 타인들과 맺는 관계양식 및 가족실천이 교차하는 것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그 두 가지 측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사회정책과 가족정책 모두 개인의 사회적 조건들과 다양한 관계양식 및 가족실천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영해내어야 한다. 그럴때 가족정책은 이데올로기적 프로파간다 역할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관계를 담아낼 수 있다. 또한 사회정책에 내포되어 있던 가족 정상성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차별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이 강좌는 사회정책이 ‘가족’을, 가족정책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질문하며,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서 가족정책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제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나영정 |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 가족구성권연구소(준) 연구위원

0. 사회정책에서 ‘가족’, 가족정책에서 ‘사회’를 질문하기

- 가족정책이란 무엇인가?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래로(2005) 왜 정의로운, 민주적인, 인권적인 가족정책에 대해서 묻지 않았나?
-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에 대한 진보적인 담론은 계속 진척되지 않았는가?
- 90년대말, IMF 여파로 인한 ‘가정해체’, ‘남성가장모델 해체’, ‘남성 노숙인 증가’
-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위기’, 만혼/비혼 ‘여성’, 고령난임여성 ‘문제’
- 청년층의 부상, 세대론, 고시원, 부동산 시장 위기 돌파를 위한 규제완화
- 일생활균형 담론, 비정규직 여성과 청년 대책
- 보육업무, 청소년업무 이관 등에 따라 여성부->여성가족부

그런데 왜 위의 예시들은 가족정책이 아니었는가? 혹은 단지 가족정책이었던가?

1. 가족정책은 왜 고립되었나

- ‘가족정책의 고립화’란 오늘날 가족정책이 개별 가족이 직면한 위기 해소에 실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사회보험, 주거, 노동, 돌봄정책 등)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다(김혜영, 2012; 송다영·정선영, 2013).
- 가족정책이 개인과 가족이 처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개선하고 상호 연계하는 ‘관점’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족이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김혜영, 2012).

1) 제도·환경 개선보다 가족 대상 서비스에 초점

- 가족정책이 가족 대상 서비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접근으로 변화해야
- 예를 들어 남성 개인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족정책의 영역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정책을 가족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가족 관련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가족 자체의 문제와 기능만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것에 한정하여 일시적, 분절적, 문제중심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의 일부로 공교육 체계에 포함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가족정책의 과제가 되어야 (김소영 외, 2016).
- 가족 자체가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를 바꾸는 방식의 접근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

2) 여성·인권정책 및 다양한 사회정책과의 연계 미흡

- 가족은 언제나 한 사회의 불평등한 젠더 관계와 세대 관계,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위계를 경유하여 형성
- 가족은 이러한 위계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완충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한 위계를 오히려 재생산하는 장소이기도
- 따라서 가족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개인들의 인권이 가족 안에 침해되거나 박탈될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가족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평등하고 자율적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
-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여러 사회정책뿐 아니라 여성정책, 인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이들 정책의 교집합이자 합집합으로 가족정책의 자기 위상을 확립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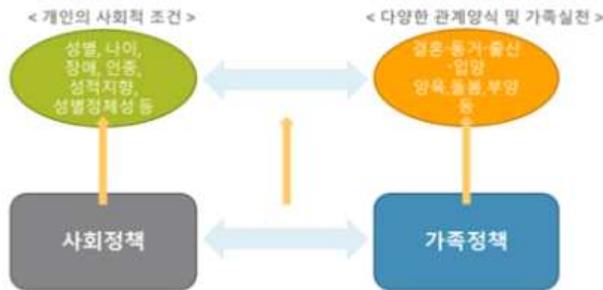
2. 교차적 접근으로서의 가족정책

- ‘교차적 접근’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이들이 친밀한 타인들과 맺는 관계양식 및 가족실천이 교차하는 것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그 두 가지 측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는 관점
- 교차적 접근은 그 자체로 가족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며, 또한 형태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가족정책과 사업을 설계할 때 가족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방법

1) 다양한 사회적 차별 해소 정책과의 연계

- 가족정책을 설계·실행할 때,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여부, 질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겪는 삶의 문제들이 단지 가족을 이루고 유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전제할 필요
- 가족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이기도. 빈곤,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 육아, 간병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계적 노동으로 인한 부담, 사회적 소수자 위치로 인한 차별은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개인들이 맺는 가족 관계들은 그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함.
- 때문에 가족정책은 여타의 사회정책과 분리, 고립되어 실행될 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기 어려움

- 사회정책(사회보험 제도, 노동정책, 주거정책 등)의 '정상가족' 중심성과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여부, 질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이 개인 및 가족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다양성을 지지하는 가족정책을 성취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개인들의 시민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이들의 자유로운 가족 구성과 가족실천이 가능해 진다는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교차적 접근은 위 그림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관계양식이자 실천으로 가족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정상가족을 중심에 두고 그 외 가족들을 특수한 가족형태로 분류하는 형태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함.
- 이러한 교차적 접근은 '이혼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의 '취약성'을 부각하는 가족적 분류에 의문을 제기함. 가족형태가 취약함으로, 정책적 대상으로 지 못되는 것을 넘어서 관계성, 양육과 돌봄, 경제적 협력 등의 가족적 실천의 다양한 양태에 주목하기 위해서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이 좀더 연계된다면 '형태적 취약성'은 더 이상 유의미한 지적이 아닐 수 있음.

※ 교차적 접근으로 1인 가구 다시 보기

- 교차적 접근으로 보면 1인 가구는 하나의 단일한 욕구를 갖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상이한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혼자 가구를 꾸려나가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한다.
- 1인 가구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때 다양한 계층, 성별, 세대,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인이라는 가구 형태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각각의 1인 가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이 현재 당연한 과제와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1인 가구는 혼자 살면서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남성은 '외로움 등 심리적인 요소'와 '건강', '식사 해결' 등에 대한 걱정이 크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전/위험' 및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 ▲1인 가구는 안전 측면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여성 59.6%, 남성 19.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큼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본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독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1인 가구의 삶에 장점 및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여성의 만족도가 높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펴낸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단지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의 정책적 요구가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이러한 욕구의 차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이 가족생활로 인해 더욱 차별을 느끼고, 성차별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따라서 여성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집에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성평등 증진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위험도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때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교차적 접근으로서의 새로운 가족정책은 이러한 비전을 요구하는 것.
- 또한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들을 고려하는 정책도 필요. 이들 소수자는 각각의 소수자성으로 인해서 가족실천으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

2) 여러 사회 이슈와 결합된 가족정책 이슈의 확장

- 교차적 접근은 가족 이슈가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여부, 질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의 이슈와 항상 겹쳐져 있다는 데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가족정책의 대상과 사업의 방식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
-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특정 세대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기도 한다. 부양자로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남성은 은퇴 이후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겪는 문제는 또한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성적 소수자들의 가족 구성이 법적·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러한 차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자,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정책은 보다 많은 사회 이슈들과 접속함으로써 정책 이슈와 현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의 지향

- 궁극적으로 가족정책은 사회의 공공성과 개인의 역량을 지지하고 증가시키는 방향에 서되,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 관계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관계양식 및 가족형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위계와 차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인의 성별, 나이, 장애, 질병 등의 조건이 관계 안에서 특정 역할로 환원되거나 부담과 의무로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사회/정책에서의 가족 사회/정책에서의 가족상황차별

-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정의
 - 1) 특정한 파트너십과 돌봄의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 및 그를 거쳐 형성된 가족관계의 특성으로서 '가족구성과정'을 이유로 한 차별
 - 2) 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역사나 상태, 행위로 인하여 가족 전체,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뤄지는 것으로서의 '가족구성원'을 이유로 한 차별
 - 3) 가족에 대한 부양, 돌봄, 지원, 가족 유대 형성, 경조사 의무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

사회보험

- 건강보험은 친족관계에 기초한 고유한 부양-피부양 체계를 보험 가입과 혜택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어,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가족공동체들은 제도 안에 통합되지 못함.
- 소득 기여가 있는 가족구성원(생계부양자)을 가입자로, 그와 부부-친족 관계에 있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피부양자로 규정하는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보장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
-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현 제도 안에서 공적 의료보장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가입 자격에서 가족(또는 세대)의 범위를 확장하여,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공동체로 부양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변화하는 가족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

임대주택정책

- 주택이라는 자원의 사회적 분배는 사회가 강제하는 특정한 가족모형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배제하거나 아예 공동 거주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초래. 이는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가 정상가족에 기초한 '세대' 개념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발생.
- 주민등록법상 "세대"는 "주민등록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지만, 임대주택 관련 제도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이는 혈연가족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 그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세대주가 혈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짐.
- 실제로 가족의식을 가지고 동거하고 있으나 공문서상 단독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 우선순위, 신청가능 면적 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제.

고용 관련 정책

- 고용관련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노동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여러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 가족상황별로 법·제도의 적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
- 이력서를 제출할 때 가족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게 한다거나 면접 과정에서 가족사항에 대한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은 정상가족 바깥의 가족구성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관행.
- 가족임금, 가족수당, 육아휴직 등 가족 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문제임.
-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가족형태, 가족의 구성 과정, 가족 내 지위, 가족 책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고용 관행을 '차별'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요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우리사회의 오랜 전통인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복지제도는 가족을 1차적인 생계의 기초 단위이자 개인의 보호 장치로 기능하게 해옴. 때문에 개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의 정의와 의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개인의 수급권을 달리 정하고 있음.
-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친족·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강제함으로써 빈곤층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방치하는 문제적인 규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수급기준에 따라 현재 가족을 해체하거나 스스로 법적 가족 구성을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함.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권리

성적시민권에 대한 다이앤 리차드슨의 논의

Practice

-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exual activity/ 참여
- The right to pleasure/ 쾌락
-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결정

Identity

- The right to self-definition/ 정의
- The right to self-expression/ 표현
- The right to self-realization/ 실현

Relationships

- The right of consent to sexual practice in personal relationships/ 동의
- The right to freely choose our sexual partners/ 선택
- The right to publicly recognized sexual relationships/ 인정

계속해나가야 할 질문들

-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교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권과 인권이 어떠한 전제 위에 만들어져있는가를 계속 질문해야 함.
- 개인의 성적 실천, 정체성, 관계들의 영역을 문제 삼는 성적시민권은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함.
- 교차성의 관점을 통해서 가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과 가족의 실천이 놓인 구조적인 맥락을 파악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향함과 동시에,
- 교차성의 관점을 통해서 노출되는 국가제도가 성적/재생산적/가족적 실천, 정체성, 관계에 대해 관리하고 규율하는 성장, 발전, 정상성의 규범을 어떻게 해체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함.

실천적 접근으로 ‘가족하기’

‘가족하는 개인’들과 해체된 정상성

현재 우리는 이성애 결혼 중심의 '제도'로서의 가족이 균열되고, '혼자살기'와 '함께 살기'의 관계의 양식이 다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듯, 생애모델이 유연해지고, 다양화되는 시대에 더이상 이성애 결혼 중심의 '제도적'인 관점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가족을 개인이 수행하는 실천으로 바라보는 관점, 즉 '가족하는 개인'들의 삶의 양상으로 관점을 이동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시민으로 인정되고, 존중받는가의 문제는 개인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생애모델의 다양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들의 실천을 위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족을 공공성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시민권에 대한 논의와 연결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본 강좌는 가족제도가 아니라 '가족하는 개인'들의 가족실천에 주목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정상성'에 대한 인식을 해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평등과 인권의 관점으로서의 개인, 가족, 시민권에 대해서 재사유하고자 한다.

김순남 | 성공회대학교 교수, 가족구성권연구소(준) 대표

나누고 싶은 이야기

- ◆ 가족실천의 양상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 그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 ◆ 가족제도에서 '가족하는 개인'들로의 관점의 이동은 무엇을 제기하는가?
- ◆ 불평등한 다양성이 아니라 평등한 가족/관계적 다양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가?

- ◆ '이상적인' 시민
- ◆ '이상적인' 관계
- ◆ '이상적인' 생애과정
- ◆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는가?

가족구성권

- ◆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 ◆ “새로운 가족구성권 운동은 기존의 가족과는 다른 형태로 인해 ‘구멍 난’가족 기능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도록 설계된 기존의 가족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08:34)

가족구성권 요구와 정상성 비틀기

- ◆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는 부계혈통주의, 성별분업구조에 기반한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적 ‘정상가족’의 특권을 해체하고, 혼인.혈연가족에게 위임되는 사회안정망이나, 가족부양의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적 가족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생애 모델을 공론화 하는 과정

생애모델의 변화

- ◆ 전통적인 이성애 결혼 생애각본과 가족적 삶의 양식의 변화, 젠더관계, 섹슈얼리티의 실천의 비정형성
- ◆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intimate troubles)과 다양화
- ◆ '정상성'의 균열 -이성애 친밀성의 위기(김순남, 2016)

친밀성 변동의 시대-'정상성'의 균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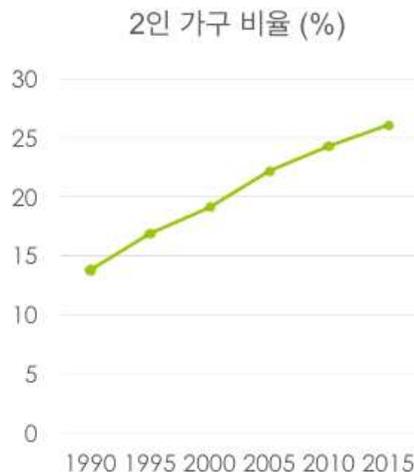
- ◆ '가족'을 키워드로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 ◆ -기존의 '가족'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하는 관계를 포함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실제 대다수의 가족들이 사회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
- ◆ -다양한 방식의 친밀한 관계를 불온시하는 사회에 개입하는 것
- ◆ -불평등한 다양성이 아니라 평등한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실천(김순남, 2017)

전형적 가족모델의 약화와 생애모델의 다변화

- ◆ 전형적 가족(the family)에서
→ 다양한 가족(families)으로
- ◆ 1인 가구의 급증
: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약 30%를 차지
→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등장

전형적 가족모델의 약화와 생애모델의 다변화

- ◆ 2인 가구 비율의 증가
: 1990년 13.8% → 2015년 26.1%로 2배 증가
: 2인 가구 및 1인 가구 통계 수치에 **비혼동거 가구가 숨어 있고,**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함**
- ◆ 한부모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중에서 10.9%
(2017,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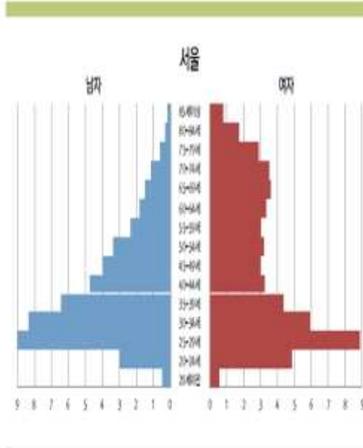


출처: 사회조사보고서 (2014)

가족주의 신화의 붕괴와 관계양식의 유동성

- ◆ 정부정책이 청년세대의 결혼지연이나, 결혼 거부를 단순히 '결혼하지 못한 루저'나 저출산 주범으로 상정
→ 가족정책을 고용정책, 탈빈곤 정책, 여성 정책과
교차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부재할 수 밖에 없음.
- ◆ 다양한 관계의 출현은 더이상 임시적인 욕구가 아님
→ 유동적인,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의미
: 30대 미혼 중에서 45%정도가 '결혼에 회의적'
: 40대 이상의 미혼은 '결혼 의향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옴(여성정책연구원, 2017).

서울과 수도권의 1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구조



출처: 국가통계포털 (2010)

가족주의 신화의 붕괴와 관계양식의 유동성

- ◆ 정상가족의 '그림자 시간'으로 배치되는 다양한 관계들이 아니라,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살고 있는, 내가 믿는, 절망 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진정한 보호자'라는 요청에 가족정책이 응답해야 할 시점임
- ◆ 1인 가구, 동거, 결혼, 이혼 등은 생애에서 분절적인 경험이 아니며, 생애 전반에 걸쳐서 재구성 되는 관계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함
- ◆ 정상가족과 사회의 '위험군'이나 '결핍'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평등에 기반한 가족 상황 차별해소, 성평등에 대한 인식, 공적인 공간에서의 차별해소를 위한 시민권으로서의 가족정책의 관점 필요함(김순남 외, 2018)

결혼 관계를 넘어 '함께살기' 방식의 다양화

- ◆ 비혼 1인 가구가 '커플되기'와 분리되는 고립적, 단절적인 관계가 아님
→ 결혼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가족주의의 획일성으로부터 탈피
→ '함께 살기'의 관계모델이 결혼으로 한정되지 않고 유연해지고 있는 현실(김순남 외, 2018)
- ◆ 40대 이하 그룹 : '동거' 수용도가 높고, 획일적인 가족 형태 및 문화·가치관을 불편하게 인식(변수정 외, 2016)
- ◆ 비혼 1인 가구 : '동거' 동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 답변 낮음. 그러나 '결혼 외의 관계에서의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지수가 높게 나타남(호정화, 2014)
- ◆ 2015년 전국 20대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시사위크, 2015.07.29.)
: 20대의 2명 중 1명 꼴인 48.3%가 “실제 동거경험이 있거나 주변에 동거 중인 연인이 있다”고 함

내가 선택한 관계/가족(families of choice)(Weston, 1991)

- ◆ 주로 | GBQ와 연결된 개념/그러나 전통적인 가족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연결해서 현재 사용
- ◆ -패치워크 가족-다양한 혈연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백-게른스하임, 2010)
- ◆ 비규범적인 친밀성-친구사이, 일대일관계적 사랑의 변화, 성적친밀성과 무관한 동거, 우정적인 가족(networks of relationship) (Weeks et.al., 2001)
- ◆ 강제적 이성애주의에서 강제적 커플주의에 대한 비판- LGBTQs(Wilkinson,2014)
- ◆ 퀴어가족-부치아빠/팸엄마, 레즈비언 엄마들-성별위계에 매여있지 않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젠더란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다-젠더역학관계의 변화 (헬버스타, 2014)
- ◆ 규범의 불안정성의 가시화

가족실천(family practice)

- ◆ 몰간(1999)은 가족을 명사(noun)가 아니라 최소한 형용사 그리고 동사(verb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족 실천(family practice)”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다. 즉,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족이 어떠한 가족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형용사적으로 한부모의 가족, 싱글맘 혹은 공동체의 가족, 동거의 가족, 그리고 동성애의 가족 등. 특히, 가족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실천 속에서 가능하며, 그러한 실천은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족실천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천으로서의 가족

- ◆ 이성애 정상가족의 독점적 지위의 변화
- ◆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개인에 주목
- ◆ 집합명사가 아닌 동사적 개념으로 규정
- ◆ 가족하기의 유동성과 개방성에 주목
- ◆ 친밀성과 돌봄, 경제적 협력과 부양을 하는 개인들의 가족실천(김순남 외, 2018)

동질성으로부터의 탈주의 시대

- ◆ 사랑과 이성애의 고리들
- ◆ 지정된 젠더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
- ◆ 섹스와 결혼의 연결점
- ◆ 결혼을 통한 자녀양육과 부모됨의 방식들
- ◆ 혈연가족을 중심으로 한 돌봄의 양식들
- ◆ 동거를 임시적인 경험으로 배치하는 사회적인 가치의 변화
- ◆ 사회적 위치성의 차이와 가족실천의 다양성(김순남, 2017)

동반자관계의 비가시화

- ◆ 5년 넘게 커플 관계를 맺고 있는 28세 레즈비언의 이야기
- ◆ 이번에 보험을 드는데 그 수령인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 입원했을 때도 보호자 그것도 파트너를 지인으로 해서 했거든요. 서류 솔직히 서류한장이긴 하지만 좀 그렇다. (죽음의 순간에) 보험이든 적금이든 뭐든 그거를 배우자한테 주고 싶은거지. 내 배우자가 열심히 더 살수 있게 돈은 정말 몇푼도 안되고 의미도 안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건데 그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거예요.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구상에 둘이 이렇게 발붙히고 살면서 너와 내가 같이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증거인데 그게 종이 한장도 안된다는거잖아요. (김순남, 2013)

‘가족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들

“대안가족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어요. 혈연만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지 말고요
장애 여성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정해 달라고.”

“갑자기 같이 살던 사람 아팠어요. 우리가 가서 간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략) 특히나
독립해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또 막판에 가족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발생해요). 간병(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보호자 사인이 필요할 때…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혈연) 가족이
와서 사인을 해야 되고 (혈연) 가족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혈연 가족이)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빨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가족들 연락이 안 돼서
그냥 핸드폰만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가족구성권연구모
임, 2008)

‘정상가족’외의 가족에 대한 낙인 강화

“지금 건강가족의 정의가 분명하고, 이혼 뒤에는 위기가 붙잖아요. 이혼 가족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이혼 위기 가족이라고 칭해지고, 취약 위기에 들어가는 가족
이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가족… 아니 왜? 한부모 가족이 왜 취약해? 도리어 양
부모 가족 중에 취약한 가족이 너무 많은데. 근데 형태로서만 정상이면 취약 위기
가족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저는 취약 위기 가족 범주에 들어가 있는 그 가족을 그렇게 범주화 하는 것 자체
가 낙인이고 힘을 잃게 하고요. (중략) 제가 한부모 가족 담당하는 사람인데 자
조모임 가서 명함을 드려요. 그럼 명함에 취약 위기 가족 담당이라고 적혀있어
요. 그럼, 한부모 가족은 ‘나는 취약 가족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유관단체활동가
인터뷰). (김순남 외, 2018)

가족실천 관점에서 1인가구 다시 보기

- ◆ 가족실천을 수행하는 개인으로서의 1인가구
- ◆ 생애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 ◆ 관계적 존재로서의 1인가구로의 접근
- ◆ 비혼자녀들이 수행하는 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 ◆ 혼자살기와 가족실천의 유기적인 인식의 변화(김순남 외, 2018)

개인의 '가족실천'

- ◆ 규범적으로 정의된 가족기능을 모든 가족 단위들이 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문제화
- ◆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가족단위(형태)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 실재에 주목
- ◆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가족실천을 하는 다중적인 관계양식에 각각 분리 배치.
- ◆ 개인의 가족실천에 주목한다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연루되는 가족실천의 양상을 지원하는 것 (김순남 외, 2018)

가족단위에서 개인의 다양한 가족실천으로서의 관점의 이동

- ◆ 획일적인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변화
- ◆ 비제도적 관계양식의 제도화
- ◆ 개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가족실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변화
- ◆ 가족상황 차별 해소
- ◆ 다양한 가족실천의 사회적 인정과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 ◆ 동거가구에 대한 공동소유 재산 인정, 해소시 재산권 보장, 상호부조의 의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 ◆ 동거인에 대한 돌봄권, 연금, 직장 내 가족 경조사휴가 보장과 주거정책 대상으로 포함
- ◆ 혼인, 혈연관계외의 생활동반자로 등록된 동거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대상 확대
- ◆ 혼인배우자, 친족, 혈연가족 이외의 관계인(생활동반자 뿐만 아니라 환자가 지정한 보호자 1인)에게 의료결정권(수술동의서, 수술내용, 질병상태, 퇴원 수속 등) 부여.

다양한 관계 인정으로 의료법 개정

- ◆ 현재 국내 의료 관련 법률에서 의료 결정 동의 범위가 친족 중심(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자매·형제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음. → **혼인 외 관계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행이 크게 불리함**
- ◆ 친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동거 등의 상황에서 배우자 지위가 법적 인정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 자기결정권 실행이 어려움 (만약 동거 상황에서 친자가 생겨날 경우 더욱 의료상 '대리결정'의 법적 보장이 어려움)
- ◆ 대만 : 의료법의 동의 취득 대상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 친족 또는 관계인'으로 정의함
- ◆ 관계인은 '동거인이나 친한 친구 등 환자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됨.
(타이중 시 정부 위생국의 2017년 7월 21일 공문 내용)

평등한 가족실천에 대한 지원

- ◆ '정상가족'중심의 일·가정양립 vs 위기적, 잔여적 지원정책으로서의 한부모, 비혼모, 다문화 가족 등의 정책의 변화
- ◆ 영국에서는 '일·가정양립'에서 **성별화 되지 않은(gender-neutral) '일·생활 균형'** 용어를 사용
→ 이 정책이 여성만이 아닌, 전 고용주 및 전체 근로자(남성 근로자 포함)에게 이로운 정책임을 인식시키려 하는 데에 주 목적 (Lewis, 2009)/ 또한 사회적 약자도 포함됨
- ◆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 제정으로 '모든 개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2014년 '모두를 위한 유연근로청구권' 신설 - 모든 가족의 자녀 돌봄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노부모 등 대상의 나이 제한 없는 돌봄 가능/가족구성원이 사망시 애도 시간도 청구 가능
- ◆ 평등한 일·생활 균형의 핵심은 포괄적 고용보호제도로의 발전으로 해석 (김영주 외, 2017).

“늙고 외롭다가 단골 협박인데요”(김애순, 76.비혼주의자)

- “사랑을 꼭 특정가족에게만 느끼려고 하면 그렇죠. 형제자매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나는 간병을 자청해 병실을 지켰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만만하냐’고 꾸짖힐 수도 있지만 훌가분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데 남다른 보람 느끼면서 오빠가 위암 수술 받을 때, 언니가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다 내가 조카들과 번갈아 병실을 지켰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고요.”

관계적 시민권

관계적 시민권의 정의:

관계적 존재성에 기반한 시민권(Voet, 1998)

가족 내 외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친밀성, 돌봄, 평등한 관계맺기 등에 대한 새로운 시민권의 인식필요

마무리 하며

- ◆ 모든 관계의 '원본'과 '정상'은 없다
- ◆ 삶의 재생산(돌봄, 친밀성, 경제적 협조 등)에 연결되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족/관계적 실천에 대한 지지
- ◆ 한 개인의 생애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가족, 관계적 삶에 대한 유동적, 개방적, 복합적인 실천에 대한 인식 변화
- ◆ 다양한 '혼자살기'와 '함께 살기'가 가능한 삶의 자립이 구축되는 사회로의 변화

Q& A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한 곳들

문화연대

문화연대는 '문화사회'를 꿈꾸고 실현해나가는 시민단체입니다. 문화사회는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민주주의가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문화권리는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권리이며,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이 확대되어 시민의 일상적 삶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식화된 민주주의, 기념화된 민주화를 넘어 개인적, 사회적 상상력과 표현이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제약되거나 침해되지 않는 문화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이 있습니다.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는 새로운 문화이론을 통해 사회를 해석하고, 대안적인 문화정책 생산 및 학술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합니다. 월례 발표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위해 실험하고 탐구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문화연구 강좌, 세미나, 공간 대관 등을 통해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재생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유공간 '물질'을 활용해 대관 사업 및 공간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준)

가족구성권 연구소는 다양한 가족의 차별해소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구성권이 확보되는 사회를 위해서 소수자, 페미니즘, 인권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사회연구소 + 공유공간 [물질]

공 간 대 관 안 내



“

공간은 비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물질이 운동하고, 스며들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공유공간 “물질”은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미 물질인 우리는 다른 물질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공간 “물질”에서 함께 만나고 채우고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information

주소 마포구 포은로 27, 2층

요금 세미나실 _ 기본 2시간 3만원
(초과시간당 1만원)

운영 10:30 ~ 22:00
공휴일 휴무

강의실 _ 기본 2시간 5만원
(초과시간당 2만원)

이용 냉난방기, 얼음/정수기,
빔 프로젝터 (노트북 미제공)
화이트 보드 제공

예약 kccs.or.kr
대관 현황 및 유의사항 체크 필수

문의 02 - 745 - 1603
cultures21@naver.com

